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9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대 상 시 설			해제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조절저수지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및 신설완료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41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나.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2. 사업의 명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3. 사업의 시행목적

-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4. 사업의 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66,304	100.0		
주거 용지	소계	121,165	45.5		
	공동주택	92,349	34.7		
	주상복합	23,481	8.8		
	근린생활시설	5,335	2.0		
도시기반 시설 용지	소계	134,461	50.5		
	공원	90,946	34.2		
		근린공원	77,202	29.0	
		소공원	13,744	5.2	
	녹지	3,241	1.2		
		연결녹지	3,241	1.2	
	광장	1,168	0.4		
	교육시설	9,877	3.7		
	종교시설	922	0.3		
	공공복합시설	5,085	1.9		
	유보지	440	0.2		
	주차장	1,602	0.6		
	저류지	(6,955)	(2.6)	공원내 중복결정	
	도로	21,180	8.0		
기타시설 용지	소계	10,678	4.0		
	의료, 연구 등	10,678	4.0		

5. 사업의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0.12.31

6. 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호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72호(1971.7.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91호(2003.12.15.)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구머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